



##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

### 추진목적

-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### 법적근거

-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(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), 제14조(위생관리등급공표등)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(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), 제21조(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), 제22조(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)

### 평가대상


-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

### 추진내용

- 지자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 관리
- 지자체 평가실시

### 평가 결과 공표

- 녹색등급(최우수업소) : 평가점수 90점 이상업소
- 황색등급(우수업소) : 평가점수 80점 이상업소
- 백색등급(일반업소) : 평가점수 80점 미만업소

[파일다운받기](#) 

### 담당자

-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위생팀 ☎061-470-2313